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5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박균택·허영·박정
박정현·김주영·김용만
송기현·박지원·홍기원
김남희·여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호 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등이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 2)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3)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4)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5)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직무관련자”란 공직자 등</u> <u>이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기준(「공직</u> <u>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u> <u>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u> <u>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u> <u>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u> <u>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u> <u>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u> <u>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u> <u>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u> <u>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u> <u>법인 또는 단체</u> <u>나.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u> <u>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u> <u>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u> <u>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u> <u>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u>

런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
는 법인·단체

2)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
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
인·단체

3) 재결(裁決), 결정, 검정
(檢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
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4)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5)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u>받는 개인 또는 법인 .</u> <u>단체</u>
--	-----------------------------------